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8. 9. 4.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98. 9. 5
다. 상정일자 : 98. 9. 14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내무과장 최영옥
나. 개정사유
- 기능쇠퇴, 유사·충복 기구의 통·폐합과 현행기구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읍면 위임사무의 소관을 새롭게 정함.
 - 군·읍면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 다. 주요내용
- 별표2의 권한 위임사항을 별지와 같이 변경
 - 위임사무의 삭제 - 읍면 6급 이하 공무원 정기 호봉 승급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6급 이하 공무원의 정기 호봉 승급"을 군의 업무로 회수한 것 이외는 읍면 위임 사무의 변동은 없으며 단지,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 조정을 위한 개정 조례임.
- 향후 읍면이 "주민자치센타" 등으로 기능이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화 등을 통하여 통합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에서 처리도록 함으로써, 읍면은 명실공히 주민서비스 업무만을 수행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사무의음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권 한 위 임 사 항

(개 정 안)

실과 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임기관	비고
실과소 공 통	1. 추정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마목	읍면장	
총무과	1. 읍면 6급이하 공무원 휴직발령 2.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3. 읍면계장 출장소장 보직 발령 4. 읍면 8급이하 지방공무원 특별 임용 제청 5.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 해제 6. 이 행정 지도 7. 문서보관 및 폐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항 ○ 사무관리규정 제28조 제31조	읍면장 " " " "	
재무과	1.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군세의 납세고지서 교부 3.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4.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5. 군유 잡종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자료 조사 6. 군유 잡종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 조사 7. 군유 잡종재산 임대 및 사용료 징수 독려 8. 군유 은익재산 발굴	○ 지방세법 제4조 및 화순군 군세조례 제6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 규칙 제3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 규칙 제4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 규칙 제26조 ○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읍면장 " " " "	
민 원 봉사과	1. 인장업 신고 사무 2.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 3.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의 수리 4.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5.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6.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용도 변경허가 또는 소유권 표시사항은 제외) 신고의 수리	○ 인장업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 건축법 제9조 ○ 건축법 제15조 제2항 ○ 건축법 제72조 ○ 건축법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읍면장 " " " "	

실과 소명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비 고
농산과	1. 수도묘관 공동방제사업 2. 수도비배관리 및 지도 계몽 3. 농약 공급 4. 농지전용 신고수리	○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11조 ○ 농지법 제37조, 농지법시행령 제40조,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	읍면장	"
산림과	1. 신고에 의한(임야외) 입목 벌채 2. 가로수 관리 3. 입산신고	○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87조 제1항 10호 ○ 산림청예규 제302호(87. 1. 3) ○ 산림법 제98조	읍면장	"
건설과	1. 도로점용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 허가 3.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4.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 시설물 사후관리	○ 도로법 제22조,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도로법 제22조,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	읍면장	"
도시 경제과	1.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간신 2. 토지 출입 허가 3. 토지형질변경 허가(1,000m ² 이하) 및 단속 조치 4. 무허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5. 연면적 85제곱미터(건축법시행 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6.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규 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로써 5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다만, 동 조동항등호아목 및 가목의 규 정에 의한 관리용 건축물의 증 축을 제외한다. 7.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 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 인 창고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 ○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92조 제1 항 ○ 건축법 제69조 제1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읍면장	"

실과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수임기관	비 고
도 시 경제과	8. 죽목의 식재 9.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5호 별표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 다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병원, 수퍼마켓, 금융업소 및 학원 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10.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 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 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읍면장 "	"
보건소	1. 대마 재배허가등 2.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지도업무 3. 배점 범위안의 방역약품 유류 수불 및 방역장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마관리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4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읍면장 " "	"

[별표]

권한위임사항

(개정안)

실무소명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비고
총무과	1. 민방위 준비 명령 2. 민방위대 동원유예권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및 제41조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3항	읍면장	
재무과	1. 도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도세의 납세 고지서 교부 3. 도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4. 도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 도세조례 제6조 제2항 ○ 도세조례 제6조 제2항 ○ 도세조례 제6조 제2항 ○ 도세조례 제6조 제2항	읍면장 " " "	
사회복지과	1.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관리업무 2.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유골에 대한 개장 명령 3.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 식품위생법 제17조, 제22조 및 시행령 제13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읍면장 " "	
농산과	1. 농약판매업 등록 및 폐업, 휴업, 재개업 2. 종묘상의 등록 3. 종묘상의 취소 4. 비료판매업 등록 및 신고 5. 비료판매업 등록 취소 6. 비료판매업의 등록 제한 7. 비료판매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8. 비료판매업의 등록 및 취소의 공고 9. 부화업자 및 중계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종계업 등록 및 취소 나. 부화업 허가 및 취소 정지 다. 종계업 및 부화업의 감독 10. 축견의 억류 조치 교부 11. 내수면 개발관리	○ 농약관리법 제10조 ○ 종묘관리법 제3조 제2항 ○ 종묘관리법 제15조 ○ 비료관리법 제15조 ○ 비료관리법 제12조 ○ 비료관리법 제23조 ○ 비료관리법 제12조 ○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제20조 ○ 축산법 제26조 제1항 ○ 축산법 제21조 제1항 ○ 축산법 제32조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0 조 제3항 ○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	읍면장 " " " " " " " " " " " "	

실과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 법률	수임기관	비 고
건설과	1.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토지점용 허가 2.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 부속물의 점용허가 3.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식물의 식재 4.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하수를 이용한 축목의 운반 선박의 운항 5.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위해한 행위 및 유수점용에 있어서의 수리권한 신청 6.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수리권의 조정 또는 제한 7.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의 경미한 보수 8.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가. 학교, 병원, 여관등 시설사용 나. 토지가옥 물자의 사용 다.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 9.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 허가 10.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의 접수 및 시료 채취 및 봉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제25조 제1항 2호 ○ 하천법 제25조 제1항 3호 ○ 하천법 제25조 제1항 8호 ○ 하천법 제25조 제1항 9호 ○ 하천법 제25조 제1항 ○ 하천법 제29조 ○ 풍수해대책법 제38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지하수의수질보전에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3항 	읍면장	"
도시 경제과	1.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에 관한 사항 가. 가로형간판 ○ 건물 3층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3.5m'를 초과하는 간판 나. 세로형간판 ○ 건물의 3층이하, 벽면에 표시된 간판 다. 둘출간판 ○ 상단의 표시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으로 1면의 면적이 1m' 미만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7조 및 제9조 	읍면장	"

실과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틀	수임기관	비 고
도 시 경제과	<p>라. 옥상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p>마. 지주이용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상단 높이가 4m 미만인 간판 <p>바. 애드벌룬</p> <p>사. 현수막</p> <p>아. 벽보</p> <p>자. 전단</p> <p>차. 창문이용광고물</p> <p>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제거)등 행정 지도 보고사항 <p>3. 국립공원 전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 	읍면장	
보건소	<p>1. 제1종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다음 권한</p> <p>가. 홍행집회 재래 기타 다수인의 집회제한 또는 금지</p> <p>나.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 판매접수의 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p> <p>다. 상.하수, 우물 쓰레기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의 금지 조치</p> <p>라. 쥐, 곤충, 기타 전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시설의 설치 변경</p> <p>마.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수양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p> <p>2. 현지 전염병 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예방법 제39조 ○ 전염병예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전염병예방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동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동법 제39조 제1항 제9호 ○ 전염병예방법 제38조 	읍면장	